

(사업방법서 별지)

## 1. 보험종목의 명칭

무배당 알리안츠비즈플러스상해보험

## 2. 가입나이

만15세 ~ 70세

## 3. 보험기간

1년만기

## 4. 보험료 납입기간

전기납

## 5. 보험료 납입주기

월납, 3개월납, 6개월납, 연납

## 6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

보험계약대출 없음

## 7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이 없음

## 8. 보험가입금액의 설정

1계좌(보험가입금액 500만원)는 재해사망보험금을 1,000만원으로 함

## 9. 기타

### 가. 대상단체 및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

#### 1) 대상단체

이 보험의 대상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보험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.

- ① 동일한 회사, 사업장, 관공서, 국영기업체,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. 다만, 사업장, 직제,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,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
- ③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

#### 2)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

‘1)’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로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를 구성하여야 한다.

단,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①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. 다만,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,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② ‘1) 대상단체’의 ‘②’ 및 ‘③’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### 나. 보험계약자

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 다만,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

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 등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  
를 행사할 수 있다.

#### 다. 보험료의 계산

- 1) 계약체결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성별 · 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.
- 2) ‘1)’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 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(남자, 여자)를 적용할 수 있다.
  - ① 평균보험료율은 계약의 체결시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, 평균나이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.
  - ② ‘①’의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수의 증감,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.
- 3) 동일한 피보험단체(보험대상단체)에 대하여 ‘1)’ 및 ‘2)’의 성별 · 나이별 보험료율, 평균보험료율 및 평균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.

#### 라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변경

- 1) 단체 구성원의 입사, 퇴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변경할 수 있다.(단, 보험금 지급사유(특약 포함)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변경 할 수 없다.)
- 2) ‘1)’에 의하여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3) ‘1)’에 의하여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변경 전 · 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. 단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변경 전 · 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지급한다.

#### **마.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**

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약단체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를 추가할 수 있다.

#### **바.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기재할 수 있다.**